

안전시공 확보를 위한 감리제도의 개선

최 경 일 우리 협회 감사, 한국건설감리협회 이사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건설안전기술사

1. 서론

'90. 1.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책임감리제도가 시작되고 있으며 국내 건설산업은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나 숙련공의 부족 및 3D 현상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고령화, 외국 근로자 고용이 증대되는 한편, 시공과정에서의 작업상 위험성도 커지고 있으나 안전관리의식은 아직 미흡한 상태로서 재래형 반복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실태이며, 특히 안전과 감리제도의 연계성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적인 장치는 매우 소홀한 실태이므로 앞으로 이분야의 집중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안전시공을 위한 감리자의 역할과 기대

- (1) 시공자의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와 자료의 기록 유지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확인
- (2) 책임감리원은 소속감리원 중 안전관리 담당을 지정하여 현장 안전관리사항을 공종별로 확인토록 하며 안전관리 수행을 위하여 감리원 안전법규를 준수토록 함
- (3) 안전관리지침서의 내용은 감리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안전업무에 최일선 참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공사에서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의거 검토하고 점검하는 수준에서 이행되고 있는 실정임
- (4) 감리자가 좀더 능동적으로 안전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감리자가 확인이나 점검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시공사의 안전업무에 제동을 걸고 시정명령을 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이 제도적으로 장치될 때 감리자의 안전시공 역할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음

4. 안전시공을 위한 갈감리자의 구체적인 단계별 활동 제시

2. 시공과 감리제도의 안전관리 실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시공안전 분야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신체적인 안전을 관리하는 이중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상의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발행하는 감리업무 수행지침서는 감리업무행위의 근간을 파악하는데 주된 자료가 되고 있으며, 그 중 안전관리에 대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환경관리 등 감리업무의 일환으로서 안전관리의 업무가 집행 관리되고 있다.

품질보장과 양질시공을 확보하기 위한 감리제도상의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세부적이고 유관

- (1) 제 1단계(안전조직 심사)
 - 안전관리자의 임명전 자격 심사
 - 안전라인 및 조직 구성 검토
 - 안전활동 방침 및 계획 수립 확인
 - 안전예산 편성 심사
- (2) 제 2단계(사실의 발견)
 - 작업분석 확인
 - 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여부 확인
 - 안전회의 및 토론회 참석
- (3) 제 3단계(분석업무 참여)
 - 사건보고서 및 현장조사 합동실시
 - 교육 및 훈련 공동시행
 - 작업 공정 체크
- (4) 제 4단계(대책의 선정 주관)
 - 교육 및 훈련 개선 명령
 - 규정 및 수칙 개선 유도
 - 확인 및 통제 체계 개선 업무 참여

5. 안전관리를 위한 감리제도의 문제점

- (1) 안전사고 발생시 시공자에게 일차적 책임은 있으나 책임감리제도하에서의 감리자와의 책임한계 불분명
- (2) 감리자의 안전관리업무 참여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문제발생시 감리자의 역할 모호
- (3) 감리자의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비용이 관련 법에 구체적으로 마련이 안되어 있어 능동적인 대처 미흡
- (4) 감리업무 과다로 안전관리부분에 대해 감리자의 역할 참여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

6. 개선방안

- (1) 안전관리업무가 시공사 현장소장 지휘하에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감리자가 직접적,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 법에 업무한계 명시화
- (2) 공사 착공전 실질적인 안전관리계획서가 작

- 성되도록 시공자 선정에 앞서 감리자가 우선 선정
- (3) 안전관리비가 당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감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건설기술관리법에 항목 보완
- (4) 안전교육 미이수자 및 안전관리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관리직 및 기능공을 현장에서 칠수시키도록 감리원에게 권한 부여
- (5) 착공시 산업안전공단에서 심의받도록 되어 있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심의를 통보로 조치하고 심의권한을 책임감리원에게 부여
- (6) 설계감리시 안전기술사 참여 제도 도입
- (7) 설계계약시, 감리계약시 안전관리비 지급을 법제화
- (8)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감독자 범위에 감리자 포함
- (8)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감독자 범위에 감리자 포함
- (9) 한국건설감리협회에 전문 안전진단기구 설치
- (10)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감리원에 대한 안전교육 정규시행

7. 결론

안전시공을 시공자의 전담역할로만 생각하기보다는 감리자도 포괄적으로 안전시공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현행 법규상 안전시공과 감리는 명확한 업무연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시공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점 특히 유념하여 제도적 보완책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품질보증과 성능보증을 위해 시공자는 물론 감리자도 그 역량을 발휘하여 안전한 시공을 실현함으로써 재해율과 시공상 중대사고가 저감되는 건설시장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